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 2021.02.24(수) 오전 10시

주최 |  바른사회,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지배구조포럼

본 토론회는 코로나19 관계로 유튜브 바른사회TV에서 실시간 방송됩니다.



■————— 순 서 —————■

■ 사 회

- 전 삼 현 (송실대 법학과 교수)

■ 주제발표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토 론

- 최 준 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권 혁 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

■ 종합토론

■ 폐 회



■ 목 차 ■

■ 주제발표

-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위기의 대안인가?..... 9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토 론

- 최 준 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6
- 권 혁 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 29



■ 정책토론회

발 제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위기의 대안인가?

김 원식
건국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2021. 2. 24



목차

- I. 서론
- II. 코로나경제 현황
- III. 이익공유제의 유형과 특성
- IV.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I. 서론: 왜 이익공유제?

서론

- 왜, 코로나이익공유제?
 - 재난지원금 재정의 한계
 -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 조세 징세의 한계
 - 사회보험 등 재원의 한계
 - 사회보험 재정 적자 심화
 - 2020년도 고용보험 적자 8조원 등
 - 도덕적 해이: 5년간 5번 퇴직자 1만명, 478억 지급
 - 취약계층 지원/기부 한계
 - 생계 불안 심화
 - 코로나이익공유제(안)
 - 코로나 수혜 기업의 이익 환수
 - What's next?
- 상생연대3법
 -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
 - 영업손실보상제
 - 사회연대기금제

I. 코로나경제 현황

코로나 현황

- **코로나 전후 기업 현황**
 -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여성 실업 심화
 - 모임/영업시간/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
 - 자영업 위기
 - 기업 양극화
 - IT/모바일/배달 등 호황
 - 대면 서비스업 위기
- **코로나 경제의 영향**
 - 근로자/자영업자 실업
 - 중소기업 근로자
 - 아르바이트
 - 영세 자영업자
 - 영업제한 기업: 카페 등
 - 사업주 영업손실
 - 대면
 - 영세사업자
 -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의 형성
 - 비대면
 - 배달
 - 5G/IT/플랫폼

코로나 현황

• 코로나경제위기의 공범들

- 제도적 요소
 - 노동관계법의 개정(2020.12.9)
 - 공정경제3법
 - 경영권/지배구조의 위기
 -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 배당 강요(조선일보&전경연, 2021.2.8)
 - » 국내 10대기업 배당성향: 7.4%(2012)에서 41.3%(2019)
 - » 미국 10대기업의 배당성향: 32.2%
 - » 배당성향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2배
 - 국내설비 투자증가율: 14.7%(2012)에서 9.2%(2019)
 - » 설비투자는 기업가치의 상승을 통한 주주환원임.
 - 부동산 정책
 - 가격상승
 - 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소비위축
 - 포퓰리즘
 - 선거
- 사회적 요소
 - 좌파/우파 갈등 심화
 - 재난지원금 갈등
 - 보편 vs 선별
 - 국가재정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7

코로나 양극화

- 기업
 - 대기업 vs 영세 중소기업/자영업
 - 대면기업 vs 비대면기업
 - ICT기업 vs 전통기업
- 개인
 - 고소득층 vs 저소득층(취약계층)
 - 대기업 정규직 vs 중소기업 비정규직
 - 중고령층 vs 청년층
 - 자산계층 vs 근로계층
 - 자가보유자 vs 무주택자
 - 자산양극화
 - 순자산5분위비율: 166.64배(2020), 125.60배(2019)
 - 부동산/자산 비율: 77.1%(5분위), 29.6%(1분위)
- 소득재분배
 - 성과급 잔치 vs 습관적 실업급여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8

코로나 고용시장

• 코로나 고용시장

종사상지위별	2017 4/4	2018 4/4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계	26,883	26,971	27,393	26,749	26,849	27,068	26,952
비임금근로자	6,795	6,691	6,631	6,474	6,658	6,637	6,521
*자영업자	5,691	5,598	5,565	5,494	5,578	5,552	5,49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47	1,642	1,468	1,436	1,378	1,347	1,32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44	3,957	4,097	4,058	4,200	4,206	4,170
-무급가족종사자	1,104	1,093	1,067	980	1,080	1,085	1,023
임금근로자	20,088	20,279	20,761	20,275	20,191	20,430	20,431
-상용근로자	13,554	13,896	14,499	14,581	14,458	14,528	14,518
-임시근로자	5,014	4,844	4,831	4,405	4,416	4,538	4,572
-일용근로자	1,519	1,539	1,431	1,289	1,318	1,365	1,340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1/4분기 기준 2017년 164만명에서, 2019년 147만명으로, 2020년 133만명으로 감소함.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각각 404만명, 410만명, 417만명으로 증가함.
 - 아르바이트의 감소를 의미함.
- 상용근로자 수는 증가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공공부문 채용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9

코로나 고용시장

• 코로나 고용시장



-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역설로서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95만명 증가함.
 - 현재와 같은 경직적 노동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됨.
- 2020.1 기준 현황
 -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98만2천명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 실업자수는 15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만7천명 증가
 - 서비스업, 청년층 실업 증가
 - 실업률은 5.7%, 전년대비 1.6%p 상승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10

코로나 기업성과: 개선 기준

- 매출액 기준(코스피 50)
 - 2020년2분기 순위
 -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셀트리온,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엔씨소프트, 넷마블, 카카오, 삼성SDI
 - 17위 삼성전자 (-)
 - 2018년2분기 순위
 - 삼성바이오로직스, 엔씨소프트, KB금융, 기업은행, 삼성SDI, 하이닉스, 신한지주, S-Oil, 삼성생명, NAVER
- 당기순이익 개선 기준 (코스피 50)
 - 2020년2분기 순위
 - LG,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셀트리온, 삼성생명,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삼성화재, 카카오, 삼성SDI
 - 17위 KTG (-)
 - 2018년2분기 순위
 - 삼성SDI, 카카오,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 엔씨소프트, S-Oil, 이마트, SK, 삼성SDS
 - 매출 상위 10개사 중 삼성전자 비중: 68.6%(2020), 62.9%(2019)
- 코로나 이익기업들의 특성
 - 혁신기업들
 - 인적투자 기업들
 - 생산성 제고 기업들
 - J-curve의 초기 단계 기업들
-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가?
 - 현재의 흐름 가속화 가능성 높음.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11

III. 이익공유제의 유형과 특성

이익공유제의 성격

- 초과이익공유제(동반성장위원회 제안, 2011)
 -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
- 분배적 이익공유제(민주당 제안)
 - 협력이익공유제(상생협력법안, 2020.6.16)
 - '성과공유제'에서 '성과공유제와 협력적이익공유제'로 법 개정(안)
 - 조세감면, 상생우수기업선정, 임금격차 완화 등
 - 재분배 정책
 - 준과세 성격으로 생산성 저하
 - 사회연대기금법
 - 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업으로부터 기금모금
 - 자영업손실보상법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
 - 영업제한 후 손실보상: 과잉 영업제한은 '병주고 약주고'
 - 손실편가의 어려움/
 - 방향: 기존 납세액에 따른 선별 보상(납세에 대한 credit)
 -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이낙연 대표 제안)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13

(자발적) 생산적 이익공유제

- 이익공유제(profit-sharing)
 - 근로자들의 봉급이나 보너스에 추가하여 기업의 수익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생산성 보상제도
 - 외국에서 퇴직연금의 형태로 도입 중
- 성과공유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일본 도요다 도입(1959)
 - 부품공급업체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해서 성과로 이어지면 이익을 50:50으로 분배함.
 - 도입 국내 기업
 - 포스코
- 초과이익공유제(동반성장위원회 안)
 - 초과이익은 기업의 정상 이익임.
 - 이익 = 정상이익(투자 기회비용) + 초과이익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14

(자발적) 생산적 이익공유제

- 기업간 이익 공유의 문제점
 - 공급망(supply chain) 참여기업 간 합의 사실상 불가
 - 원청(downstream)과 하청(upstream)간의 관계
 - 원청기업들간, 하청기업들간 경쟁적 관계
 - 시장상황의 변화 1:n 혹은 n:1에 따른 협력 이익의 평가 불가능
 - 시장의 Monopsony, Monopoly, 혹은 mutual monopoly 에 따른 협상력 불안정
 -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에 따른 비효율

분배적 이익공유제

- 코로나이익공유제
 - 코로나로 인한 수혜업종이나 계층이 이익의 일부를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환원
 - 연기금 투자에 ESG로 반영 추진/ 이익공유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미시적 관점(김원식, '이익공유제는 재분배 도구가 아니다', 서울경제신문, 2021.1.17)
 - 기업간 재분배 vs 개인간 재분배
 -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의 사업상 연관 없음.
 - 수혜대상은 법인/사업주: 사업주는 개인성격의 지원금 수령 중
 - 피해업종의 피해 과잉 신고를 통한 도덕적 해이
 - 수혜업종의 공유이익 축소 은폐
 - 수혜업종의 재투자 감소
 - 법제화시 수혜업종과 피해업종의 재분배 일반화 가능성으로 비효율 발생
 - 거시적 관점(이병태, '코로나이익공유제'가 위험한 이유들", 한국경제신문, 2020.2.10)
 - 편법적 법인세/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방해하고 경제성장 억제
 - 기업들은 이미 법인세, 사회보험료 등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올 나눔. 흑자기업에 벌금.
 - 자본을 외면하는 나라가 됨.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 기업들의 위험투자 노력을 저해/ 혁신동기 억제
 -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심화
 - 공동체의 건전한 사회적 자본을 붕괴: 시민의 자발적 참여 억제, 정부의존도 심화
 - 개혁의 포기/ 준조세 부활
 - 기업에 대하여 절세를 위한 분식회계 유혹 및 해외 수익 이전 가능성

분배적 이익공유제

- **영업손실보상제(정세균 제안)**
 - 록다운으로 인한 영업의 보상
 - 도덕적 해이 가능성
 - If; 납세 기록에 따른 비례 수익 혹은 고정비용 보상
 - 장기적으로 납세 환경 개선 가능
 - 월평균 24조7천억원, 4개월 지급시 98조8천억원 소요(민병덕의 원안)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상생협력법)**
 - 부작용 심각
 - 비효율 심각
 - 글로벌 산업화 발전 저해 및 역차별
 - 예, 스타벅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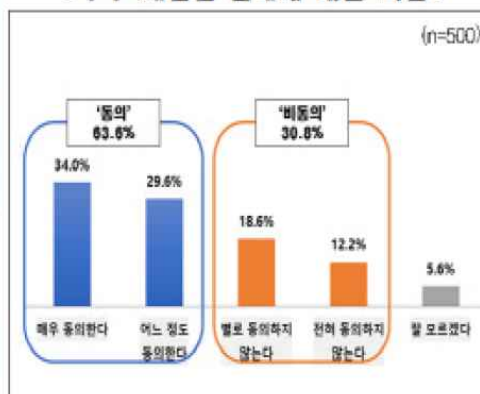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17

이익공유제 평가

- 이익공유제 전경연 서베이 결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654201>)

〈주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의견〉



〈연령별 답변 비율〉

(단위 :명, %)

주주 재산권 침해 의견		빈도	동의	비동의	잘모름
합계		(500)	63.6	30.8	5.6
연령별	20대*	(91)	74.0	26.0	0.0
	30대	(77)	75.5	24.5	0.0
	40대	(95)	48.6	45.9	5.5
	50대	(98)	60.9	34.1	5.0
	60세 이상	(139)	62.3	25.1	12.6

* 20대 : 만 18세 이상

- 출처: 디지털타임스, 또 갈등만... 못매맞는 이익공유제, 2021.2.7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18

이해집단의 관점

• 경총

- 협력이익공유제 입장('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
 - 재무적 성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 원리에 배치
 - 참여 기업간 경영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남.
 - 협력 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차체가 실제적으로 불가능
 - 글로벌 소싱에 의한 글로벌 기업의 경영체제와 부합하지 않음.
 - 협력이익공유제는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 수준의 개념
 - 법제화 시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 가능성
- 코로나이익공유제 관련
 - 1.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성과 구분이 불가능, 2. 주주의 재산권 침해, 기업의 이윤 추구 유인 약화, (반)타율적 참여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원리 위배 등 (임동원, "코로나 이익공유제, 국민 간 갈등만 심화시킬 수도, KERI Column, 2021.1.26)

이해집단의 관점

• 국민의 힘

- 자영업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 인정
- 세금, 공과금, 사회보험료 감면
- 민간인 일자리만들기, 규제완화 우선

• 정의당

- 이익공유제 반대
- 특별재난연대세제안
 - 코로나로 인한 소득/영업이익 증가 개인/법인/초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세금 5% 추가 부과
 - 사용: 재난관리기금 ½, 고용보험기금 ½
-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법 제안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관련법안

•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법안 발의자	내용	비용
민병덕·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그 손실 차액의 70%(집합금지), 60%(영업 제한), 50%(일반 업종)를 지원	월 24조7000억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체에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을 지원	월 1조2000억원
최승재 (국민의힘)	정부·지자체가 영업 손실 보상,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감면 의무화.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비용 추계 없음
배진교 (정의당)	집합금지 시 건물주가 임대료 받을 수 없고, 집합 제한 시 50% 이상 못 받아. 이 경우 국가가 못 받은 임대료 보전. 집합금지·제한 시 정부·금융회사가 공과금·이자 청구할 수 없어.	비용 추계 없음

- 출처: 조선일보, “거리두기 타격 ...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2021.1.22.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문제점

• 코로나이익공유제의 문제점

- 기업 경영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가 엉뚱하게 코로나로 인한 '재분배제도'로 둔갑
- 기업간 손실보상제로서 협력이익공유제와 는 다름.
- 대상기업의 근로자들의 반대 가능성

IV.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 **보상금 제도 도입 프로세스의 개혁 및 법제화**
 - 제안
 - 시범사업/경제사회적 분석
 - 평가
 - 검증
 - 법안 결정
 - 실행에 따른 부작용 조정
- **코로나 피해자 보상**
 - 납세 영세자영자에 대한 2019/20년도 징수 세금 환급
 - 건강보험료 대폭 감면
 - 국민연금납입금 담보 대출
- **4차재난지원금 추진 방향**
 - 생계보장 중심 지원
 - 자영업자 생계 전환형 지원: 기술교육, 민간부문 취업알선 등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 With 코로나 경제 운용
 - 규제 혁파
 -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진입 허용 등
 - 재정안정
 - 공공일자리 억제: 공공일자리는 세금일자리
 - 민간부문 청년고용 촉진
 - 중장년/노년 vs 청년
 - 정부운영의 효율화
 - 행정비용 억제
 - 공공부문에 4차산업혁명의 선도적 체화



감사합니다!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위기의 대안인가? (요약)

김원식 교수 (건국대, 경제통상학과)¹⁾

정부여당은 코로나(COVID-19)사태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 상생연대3법으로 명명한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 영업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제를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재해보상을 3차에 걸친 정부 예산지출에서 충당해 왔던 데 반하여 이 제도들은 코로나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의 수익을 재해보상 재원으로 동원하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문정부들어서 지금까지 민간 혹은 공공 부문 기업들은 급진적 친노동정책이나 공정경제3법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내왔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배달, IT플랫폼 기업들이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 비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와 손실을 감수해 왔다. 코로나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투자원금이나 기회비용을 회수하는데 못 미칠 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익공유제(profit-sharing)이란 근로자들의 봉급이나 보너스에 추가해 기업의 수익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는 생산성 보상제도이다.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하나가 되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성립 가능한 제도이다. 기업조직에 속하지 않은 이해당사자와의 이익공유제는 어떤 경우도 성공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기업간 이익공유제는 유지될 수 없고, 자칫 이익을 둘러싼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되거나, 서로 갈등만 낳아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법제화하려고 하는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를 비롯한 상생3법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많은 편법이 남발될 것이다. 결국 기업들의 투자기피, 고용기피 더 나아가 해외이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로 수익을 얻은 우리 기업들은 쿠팡과 같이 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시범사업이나 경제사회적 분석 없이 제안된 선거용 정책이다. 법제화 전에 적어도 객관적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실행된 후 도입되어야 한다.

시급한 코로나 피해 영세자영업자 보상은 과거 2-3년간 납세실적이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환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일정액을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을 폭넓게 준용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영업자 본인의 생계가 우선 유지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망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전업을 유도하는 기술교육이나 민간부문의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단순 재난지원금에 비하여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1) 김원식,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 위기의 대안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2021.2.24

■ 정책토론회

토론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

'협력이익공유제:코로나위기의 대안인가' 토론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익공유(profit-sharing) 모델과 사례

1. 전통적 이익공유 모델

- 특정사업자가 협력사와 공동으로 달성한 이익 또는 판매수입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공유
 - 영국 볼스투스 이익공유 파트너십 (1970년대)
 - 미국 크라이슬러 비용절감 제안 제도 (1989년)
 - 미국 연킨도너츠 K-Cups Program (2007년)
 - 프랑스 트레알 L'Oréal Takes Part (2020년)
 - **오펜디어, 일본도요타, 닛산, 후지타건설 다수**
- 도요타, 델타, 크라이슬러는 성과공유제이지 이익공유제가 아님
- 크라이슬러의 경우 원가절감 목표 초과분의 일부(50%)를 협력사에게 지원하는 SCORE(Supplier Cost Reduction Effort) 시행 중
- SCORE는 원가절감 목표초과 성과분만을 배분해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보다 협력사 배분 몫이 오히려 적음.
- 모두 자발적 계약에 의한 것이며 국가의 입법에 의한 간섭이 없음.

이익공유(profit-sharing) 모델과 사례

2. 플랫폼-파트너 협력 모델

-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과 참여 파트너가 어려움을 함께 부담하고 상생·협력하는 모델
 - 미국 배달앱 도어대시(DoorDash), 그럽헵(GrubHub), 포스트메이츠(Postmates) 등 한시적 수수료 인하 (2020년)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인하 (2020년)
 -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베스티에르(Vestiaire Collective)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를 인하하여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역시 자발적 계약에 의한 것이며 국가에 의한 간섭이 없음

이익공유(profit-sharing) 모델과 사례

3.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

- 이해관계자(노·사·정 등)들이 함께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체에 대한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모델
- 프랑스 보험회사 연대기금(LE FONDS DE SOLIDARITE) 재원 기부 (2020년) → 佛 정부-민간보험회사
- 독일 기업별 연대기금 조성 (2020년) → 獨 자동차·금속·전기분야기업-노조 등

성과공유제-협력이익공유제-초과이익공유제 비교

구분	성과공유제(2012년부터 시행)	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2011년 추진, 중단)
개념 정의	수탁기업이 증가할 것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 모델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위·수탁기업간 등 상호 노력중 등에 달성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계약 모델	대기업이 평소 추구한 경영이익 중표준을 초과한 부분 초과한 이익을 주주, 임직원 및 협력사에게 나눠주는 계약 모델
협력 주체	위·수탁기업간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 위·수탁기업간	대기업과 협력사간
대상 업종	제조업 등 제한적	소 업종	소 업종
공유 객체	사전계약한 협력사	사전계약한 협력사	전체 협력사
공유 방법	발생된 성과(증가할 것 등) 내에서 공유	위탁기업 성과 협력중 등에 발생한 이익 공유	협력업체 기여도 평가 등중 등에 초과한 이익중 공유

* 협력이익공유제 발의 현황 : 조정식 의원(20.6), 정태호 의원(20.12) 발의

* 시범사업 운영 중(중기부) ('20년말 현재) 106개사(민간 12, 공공 94), 1,992개 과제 등록

결론

- 나이트(F.Knight)는 기업 활동에는 정치·경제·사회적 수많은 요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데 대한 보수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기업 이익이라고 주장 →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협력업체가 경영활동 전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
- 이익공유제·배분제는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
-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 재무적 성과(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
- 참여기업 간 경영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결론

-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 개시 가능성
- ESG의 S에 반영해 국민연금의 Stewardship Code 준수 여부에 참고,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에 반영
- 손실부담 없이 이익만 공유한다는 것은 소유권 침해 → 자유 침해
- 이사의 손해배상의 민사책임, 배임·횡령의 형사책임
- 대·중소기업 협력을 위해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성과공유제' 내실화가 보다 합리적

감사합니다.

전경련 산업전략팀장

[illegible]

[illegible]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 고려아카데미텔

Tel : 02-741-7660~2

<http://www.cubs.or.kr>